

인천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가단215458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세진, 이승헌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배, 김지화

**변론 종결**2021. 12. 9.

**판결 선고**2022. 1.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8. 2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3,641,69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641,69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16. 5. 16. C에게 2,000만 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연 27.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26. D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았고, D 주식회사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2018. 12. 19. C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80624호로 C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7. 31.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35,874,548원과 그 중 19,939,051원에 대하여 2019.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19. 8. 6. C에게 송달되었으며, 2019. 8. 2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C의 아버지 E은 2019. 7. 2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F, G, H, C은 2019. 8. 29.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협의분할협의(이하 위 협의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 8. 30.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J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

### 다. 피고의 선의 여부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1971. 8. 10. 망 E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C을 비롯한 자녀 4명을 양육한 사실, 피고와 망 E은 1990. 7. 25. 망 E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고 함께 거주하여 온 사실, 자녀들은 모두 분가하였고, C은 최소한 2006년경 분가하여 혼인한 사실, 피고는 혼인생활 동안 계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왔으며, 1990년경 이후로는 망 E보다 소득이 월등히 높았던 사실, 망 E의 상속재산으로 예금채권이 남아 있었으나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피고가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C의 분가 시점, 나머지 자녀들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데 협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의 채무초과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로서는 혼인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고 이를 유지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양육한 것에 대해 보상받을 의사 혹은 배우자인 망 E이 먼저 사망함으로써 망 E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보전받을 의사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이로써 C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사나 인식이 피고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선의인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문주희**

별지